

(앞쪽)

승강기 운행금지

이 승강기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상호(건물명):

승강기번호:

불합격 내용: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직인
생략

1. 바탕: 노란색
2. 글자: 검은색
3. 사선: 붉은색
4. 크기: 320mm × 220mm
5. 종이질: 백상지 150g/㎡

(뒤쪽)

[안 내]

이 "승강기 운행금지 표지"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오니,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.